

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동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9. 11. 2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9. 11. 3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7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1999. 11. 10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홍건표)

▷ 제정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여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▷ 주요골자

-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함(안 제2조)
- 기금은 시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,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, 시 출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연한다.(안 제3조)
- 기금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, 저소득아동 구료비 지원, 소년·소녀가장 세대, 시설퇴소아동 전세자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, 학대아동 및 결손아동 보호경비, 기타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.(안 제4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가?	○ 민간단체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넉넉치는 않으며 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하고 있음.
○ 조성액 10억원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가?	○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며 많으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10억원으로 정했음.
○ 10억원이 다 조성된 후에 시행하는가, 아니면 그 전에도 시행하는가?	○ 이자 수입의 10%만 원금으로 조성하고, 나머지 90%는 2001년부터 사용할 계획임.
○ 아동복지기금은 국·도비 지원이 되는가?	○ 인건비 등 운영비만 지원됨.
○ 본 조례안은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인가?	○ 그렇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부천시에 제도권 밖과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많이 있음. 소외계층 아동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건전하게 육성지원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.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번호	제231호
의결년월일	99. 11. 12 (제74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, 지원하여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, 지원하기 위함(안 제2조)
- 기금은 시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,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 시 출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연한다.(안 제3조)
- 기금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, 저소득아동 구료비 지원, 소년·소녀가장 세대, 시설퇴소아동 전세자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, 학대아동 및 결손아동 보호경비, 기타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.(안 제4조)

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예산수반사항 : 출연금 10억원(2000년부터 2004년까지)

- 관련사업 계획서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- 기타참고 사항 : 해당없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시장은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아동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.

제3조(기금의 재원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기타수익금

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연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
2. 저소득 아동 구료비 지원
3. 소년소녀가장 세대, 시설퇴소아동 전세자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
4. 학대아동 및 결손가정 아동 보호에 필요한 경비
5. 기타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항 등 부천시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④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아동복지기금운

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.

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감사 및 회계부서, 주무담당부서장(당연직)

2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명

3.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및 운용·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(위촉직)

⑤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내로 하며,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는 아동복지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안

2. 기금결산보고서안

3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.

제9조(감사 및 수당) ①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.

②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
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업무담당과장

2. 기금출납원 : 업무담당주사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- 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- 3.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